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649
------	------

2020. 11. 30.
기획경제위원회

I.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7월 13일, 서윤기 의원 외 42명

나. 회부일자 : 2020년 7월 14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 제7차 기획경제위원회(2020. 11. 30.)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서윤기 의원)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외 계층’ 을 ‘취약계층’ 으로 함(안 제6조제2항제6호).

Ⅲ.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서울시 인권위원회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계층’의 표현을 차별적 표현으로 보고 이를 ‘취약계층’으로 용어를 변경하기 위해 발의됨.

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

- 2019년 서울시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용역 결과, 서울시 자치법규 62건(조례 57, 규칙 5) 중 96개 조문에서 시민 인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조항을 발굴하여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 자치법규 전수조사에서는 ‘차별 및 인권 침해 예방’, ‘기본권 보장 및 권리의 구제’, ‘시민참여 보장’ 등 3개 평가분야별로 9개 평가항목을 세분화하여 평가하였음.
- 이에 따라 서울시는 2건의 조례와 1건의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하였고, 82개 조문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개정 조례안(53건)이 의원발의 되었으며(2020. 7. 13), 이 중 34건이 의결되었음.

< 자치법규 분야 인권영향평가 권고내용 및 목록 >

인권영향평가				권고사유
평가항목	현재용어	대안용어	조문	
총계			96	
차별적 용어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 (9개 용어)	계		50	
	행상/노점상	→ 거리가게	5	‘거리가게’는 ‘행상/노점상’의 순우리말로 서울시 행정 순화어임(2013)
	미혼	→ 비혼	1	미혼은 결혼을 못한 미완성의 상태라는 사회적 편견을 반영한 것으로 ‘하지 않은 것’을 명확히 나타내도록 용어변경 필요
	부모	→ 보호자	1	부모 외의 대상(조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음
	소외계층 우범지역	취약계층 취약지역	14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 및 해당지역에 사회적 낙인을 야기할 수 있는 차별적 표현
	저출산	→ 저출생	11	인구감소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어 아기가 적게 태어난다는 용어사용
	유모차	→ 유아차	4	유모차는 ‘어미 母’지만 들어가 평등육아 개념에 반하는 용어로 개선필요 : ‘유아’ 중심으로 표현
	자매결연	→ 상호결연 (sister city)	12	성차별적 용어이며 우월적 관계를 나타내므로 보다 객관적인 용어로 순화 ※ 한국법제연구원(2015)에서 규정한 차별적 용어
	장애등급	→ 장애정도	1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개선 필요 <장애인복지법>
	결손가정 결손가족	→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정	1	비정상 가족이라는 고정관념, 차별적 인식이 반영된 용어 서울시 행정순화어임(2019)
편견선입견에 근거하여 대상을 한정	계		5	
	학생	→ 청소년/시민	3	학생이 아닌 학교밖 청소년 등 사회적 다양성을 포함하는 용어 사용
	주부	→ 여성	1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고용중단 여성을 ‘주부’로 특정할 우려가 있고, 실제 여성인턴십 사업으로 운영중
	특정계층 지칭		1	편견과 사회적 통념에 근거하여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을 특정함으로써 차별인식을 강화할 우려가 있음 ※ 주부, 학생 등 → 고용계약이 없는 자
입장 및 이용제한 조항에 따른 문화권 제약			8	시설관리자가 조례에 명기되지 않은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통일된 근거마련 및 시민의 문화권 보장
장애인의 문화권 제약			4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외출시 보호자의 동반이 필요함. 이에 해당 장애인과 동행한 보호자 1인에 대해 관람(이용)료 면제하여 장애인 문화권 보장
반환권 제약			8	시민이 공공시설의 이용을 취소하고자 할 때, 관람권(이용권) 반환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마련하여 시민의 반환권 권리보장
과태료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미비로 인한 구제권 제약			20	과태료가 부과징수되는 경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구제 절차(조항)를 마련하여 시민의 구제권 확보
시민의 공직활동 참여권 보장 및 위촉해제 관련 차별적 조항			1	‘장애’가 직무수행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해 부정적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정신상의 장애」 문구 삭제 필요

※ 개인정보보호권 보장, 주민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 여부의 두 가지 항목은 기본 조례가 있어 권고에서 제외됨.

다.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의 개념과 대상(안 제6조)

- 안 제6조는 5년 단위로 수립되는 지식재산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중 “소외계층”이라는 용어를 “취약계층”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소외계층”은 ‘사회의 여러 복지 정책이나 시설의 혜택을 받지 못하여 도움이 필요한 계층’으로 정의됨.
- 그러나 “소외”와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의를 하면, “소외”는 어떤 무리에서 기피하여 따돌리거나 멀리함을 뜻하며, 이럴 경우 “소외계층”은 사회적·경제적·교육적·문화적으로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의미함.
- 이에 반해 “취약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무르고 약하여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계층’으로 정의되며, 개인적 속성이나 사회적 위치(예 : 장애인, 여성, 이민자, 한부모가정), 예기치 않은 사고(예 : 질병, 재해, 실업·실직 등), 생애과정(예 : 청년, 중고령층, 기혼여성 등) 등의 차원이 병행적으로 적용됨¹⁾.

1) 방하남 외(2012) “취약계층의 객관적 정의 및 고용과 복지를 위한 정책방안”,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연구보고서.

- 현재 「경제교육지원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여러 법령에서는 ‘소외계층’ 과 ‘취약계층’ 사이에 특별한 의미의 차이를 두고 있지 않고 혼용하고 있는 상황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외계층은 사회·경제적 계층을 주류와 비주류로 차별함으로써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인권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한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지식재산 기본 조례의 근거가 되는 「지식재산 기본법」²⁾에서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서로 다른 개념 사용으로 인해 일부 용어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2) 「지식재산 기본법」 제8조(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10. (생략)

11. 경제적·사회적 소외 계층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가결

(재적위원 13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윤기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1649
----------	------

발의년월일 : 2020년 7월 13일

발 의 자 : 서윤기, 김동식, 박기재, 정진철,
김기대, 김제리, 봉양순, 임만균,
정재웅, 임종국, 양민규, 이정인,
유정희, 박기열, 오현정, 전병주,
이상훈, 김화숙, 황인구, 장상기,
오중석, 최 선, 채인묵, 장인홍,
이태성, 추승우, 이동현, 전석기,
노식래, 노승재, 김경영, 김희걸,
권순선, 문병훈, 김수규, 김광수,
유 용, 송도호, 최영주, 문장길,
최정순, 홍성룡, 김경우 의원(43명)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자치법규 개선 권고 사항을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소외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함(안 제6조제2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첨부)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식재산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6호 중 “소외 계층”을 “취약계층”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6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생 략)</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 5. (생 략)</p> <p>6. 경제적·사회적 <u>소외 계층</u>의 지식재산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p> <p>7.·8.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6조(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수립)</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 5. (현행과 같음)</p> <p>6. ----- <u>취약계층</u>----- ----- ---</p> <p>7.·8.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